

---

- 한국만화영상진흥원 -

# 특정감사 결과

---

# 부천시



# || 목 차 ||

<b>I . 감사실시 개요</b> .....	<b>1</b>
1. 감사배경 및 목적 / 1	
2. 감사기간 및 인원 / 1	
3. 감사중점사항 / 1	
4. 감사결과 처리 / 2	
<b>II . 감사결과</b> .....	<b>2</b>
1. 감사결과 총괄 / 2	
2. 지적사항 목록 / 3	
3. 처분요구와 통보사항(요약) / 4	

# I 감사실시 개요

## 1. 감사배경 및 목적

- 부천시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(이하 ‘진흥원’)은 만화영상콘텐츠산업의 중심기지로서 한국만화의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그러나, 2018년 향응수수 의혹과 보안문서 유출 의혹 및 직원 고발,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등 논란으로 인해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었음.
- 각종 의혹 사항과 조직 내 부당인사, 인권침해 민원 조사와 기타 부적정한 업무실행 등 진흥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하고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음.

## 2. 감사기간 및 인원

- 2018. 8. 22.부터 8. 31.까지 8일간 심리상담사, 법무사 등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10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음.

## 3. 감사중점사항

- 이번 특정감사는 진흥원에 대하여 ▷인사운영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, ▷청탁금지법 위반사항 확인, ▷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관리 적정성, ▷부적절한 언행, 인권침해 확인
- **☞☞☞☞**과에 대하여 ▷지도·감독부서 관리감독 적정성, ▷성희롱 발언 녹취 요구, ▷기타 민원사항 등을 확인하고
- 감사기간 중 접수된 제보사항과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확인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음.
- 아울러 실효성 있는 진흥원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흥원 노조 의견을 수렴하였음.

## 4. 감사결과 처리

- 이번 감사에서 진흥원과 ☁☁☁☁과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논란, 제보 사항 등 54건을 조사하였음. 그 중 21건 사항의 의혹 등에서 15건의 위법·부당한 사항을 확인하고, 이후 2018. 11. 22.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음.
- 한편, 제기된 의혹 등 33건 사항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부 종결하였음. 제기된 의혹 등이 중복되거나 대부분 관련자 또는 제3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기초사실 부족, 구성요건 불비, 입증자료 부족, 구체적 진술 기피, 제한적인 감사권한 등으로 모든 의혹 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.

## II 감사결과

### 1. 감사결과 총괄

- 이번 감사결과 총 15건에 대한 위법·부당사항 사항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문책 등 처분 요구를 하였음.

- **진흥원 지적사항 : 총 14건**

- 신분상 조치 : 5건 / 15(문책 2, 훈계 13)
- 기 타 조치 : 6건 / 개선 2, 통보 3, 시정 1
- 수사요청 : 2건 / 5
- 과태료부과 : 1건 / 2

- **☁☁☁☁과 지적사항 : 총 1건**

- 신분상 조치 : 1건 / 2(징계 1, 훈계 1)

## 2. 지적사항 목록

(단위 : 건, 명)

연번	지적사항	지적 건수	처 분 요 구			비 고	
			처 종	분 류	신분상 처		기타처분
	계	15					
1	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	3			문책 ○	과태료 부과	수사 요청
2	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자 공 개 의혹 관련	1					수사 요청
3	직원 논문 표절 의혹 관련	1				통보	
4	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 부적정	3			문책 ○ 훈계 ○	개선 시정	
5	◆◆◆◆◆ 추천위원 부당 제외 지시	1			훈계 ○		
6	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미이행	1				통보	
7	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소홀	2			훈계 ○	개선	
8	외부유출 업무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	1			훈계 ○		
9	위임 전결규정 위반	1				통보	
10	지방공무원법 (품위유지의무, 성실의 의무) 위반	1			징계 ○ 훈계 ○		

### 3.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(요약)

#### 1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

- 이 건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.

#### 2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자 공개 의혹 관련

- 이 건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.

#### 3 직원 논문 표절 의혹 관련

- ★★★의 석사논문과 진흥원의 「2016. ♠♠♠♠ 인력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」를 비교한 결과 논문의 17개 부분이 용역보고서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함.
- 한국만화영상진흥원(이하 ‘진흥원’ 이라 함.) ★★★(당시 ○●○●○팀장)는 2016. 10월 ‘○○○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(수도권 지역○○○를 중심으로)’ 라는 주제로 논문을 등록하였고 같은 해 12월 논문 심사가 통과됨.
- 한편, 진흥원에서는 2016. 4월 디지털만화 저작권보호 사업계획의 세부 사업인 ‘♠♠♠♠ 인력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’ 사업을 ♣♣대학교 사학협력단과 4,6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6. 12월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음.
- 진흥원의 「2016. ♠♠♠♠ 인력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」(이하 ‘용역보고서’ 라 함.) 와 ★★★의 「○○○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

연구」 석사논문(이하 ‘연구논문’ 이라 함.)의 내용 일치 여부(논문표절 의혹 관련)를 확인한 결과 연구논문의 조사방법 내용과 용역보고서 중 ‘**♀♀♀♀ 실태조사 방법**’ 부분이 상당히 유사하고, 연구논문 중 17곳의 내용이 용역보고서와 상당 부분이 일치(조사, 서술어 정도만 다른 수준)한 것으로 확인함.

▶ 연구논문과 용역보고서 내용의 상당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논문을 인준한 ★★대학교에 논문 표절 여부를 확인 조치하도록 「**통보**」

#### 4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 부적정

- 진흥원에서는 2017. 12. 21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「인사규정」에 따라 인사를 하여야 함에도 직원 보직 부여 및 직무대행 지정 인사를 부당하게 하였음.
-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 및 기한연장 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.
- 2018년 1. 22. 인사 시 ♀♀진흥팀장 자리를 무보직 2급 1명, 3급 1명과 차하위자 4급 직원 4명이 있었는데도 5급인 ★★★ 대리에게 ♀♀♀♀ 팀장 직무대행 보직을 부여함.
- 2018. 3. 6. 인사 시 ◎◎◎(1급)을 ♠♠본부장으로 발령하면서 임용이 아닌 겸직으로 처리하고, 2018. 7. 10. ♀♀♀ ♀♀♀♀팀장을 보직 해제하면서 무보직 2급 1명, 3급 1명이 있었는데도 4급을 직무대행 보직을 부여함.
- 2018. 8. 7. 인사 시 팀장으로 근무 중 휴직을 하고 복직하는 직원을 동일 직무 또는 동일직군의 직무를 부여하도록 해야 하는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◎◎◎◎국 직원으로 발령함.
-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에 대한 규정 위배여부를 검토하였으며, 그 결과 규정 위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◆◆에게 규정 위반 사항이라고 말하였으나, ◆◆이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음을 진술함.

- 진흥원 자체 「자체감사규칙」에 따라 문책요구의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에도 2018. 6. 22. 자로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전의로 같음하였고, 감사업무와 인사업무를 같은 팀 내에 사무분장 되어 있다는 이유로 ‘징계의결 요구’ 행위를 이행하지 않았음.
- 진흥원 자체 「취업규정 시행규칙」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에도
- 당초 2018. 6. 28.자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출석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을 사유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원장의 내부결재로 징계의결 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하여 2018. 8. 2. 개최하였음.
- ▶ 부적정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「시정요구」, 인사규정에 ‘재심의’ 근거를 마련하도록 「개선」
- ▶ 인사담당 팀장(♠♠♠)에 대하여 「문책요구」, 기타 관련자(○○○, ★★, ♣♣♣)에 대하여 「훈계」, 부천시 파견자 ♣♣♣ 전 ◆◆본부장에 대하여 「훈계」

<b>5</b>	<b>◆◆◆◆◆◆ 추천위원 부당 제외 지시</b>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본부장이 ○○이 특정 인사위원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2018. ◆◆◆◆◆◆ 추천위원 1순위자를 임의로 제외하라고 담당부서 팀장에게 부당 지시</li> </ul>
---

- ♠♠♠♠팀 담당자는 2018년 ◆◆◆◆◆◆ 선정관련 1차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7개 만화관련 단체로부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명단을 추천 받아, ♠♠♠♠팀장이 추천위원회 구성(안)을 보고하였음. 본부장은 ‘○○이 ㉠㉠㉠㉠에서 추천한 1순위자인 ♣♣♣ 교수 불편해한다.’ 라고 말하였음.
- ♠♠♠♠팀장 ㉠㉠㉠은 ㉠㉠㉠㉠에서 추천한 ♣♣♣ 교수 본인이 1순위

로 추천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, 「◆◆◆◆◆ 운영 규칙」에 추천위원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제외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. 이후, 팀장은 ♣♣♣ 교수가 참석하기 어려운 날짜를 심의 일자로 선정하여 1차 추천위원회 ♣♣♣ 교수를 제외하였음.

- 본부장 ■■■는 진흥원 「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」 제4조(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)에 따라 2018. ◆◆◆◆◆ 추천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「◆◆◆◆◆ 운영 규칙」에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떠한 제한 사유가 없으므로 ♠♠♠♠팀장이 보고한 추천위원으로 구성해야 함. 그러나, 특정 위원을 싫어한다는 ◎◎의 뜻을 팀장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, 특정 위원을 제외하도록 간접적으로 지시를 한 결과를 초래하였음.
- 또한, ♠♠♠♠팀장은 1차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위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상급자의 부당한 의사 전달이 있었을 때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여 추천위원을 규정에 맞도록 구성해야하는데도 위원을 부당하게 제외하였음.
- 진흥원 「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」 및 「취업규정」 위반에 따른 관련자(★★★, ♣♣♣)에 대하여 「[훈계](#)」

<b>6</b>	<b>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미이행</b>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- 2009년 제정된 진흥원 「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」에 따른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하지 않음.
- 「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」 제29조(교육)에 따르면, 원장은 임직원에게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하고, 원장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.
- 그런데 진흥원은 상기 규정을 제정하여 그동안 6차례 개정하였음에도

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자체 교육을 하지 않았음.

- ▶ 「임직원 윤리현장 및 행동강령」 규정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「**통보**」

## 7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소홀

-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·변경·폐기 업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. 또한 열람 권한 부여 적정성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음.
- 진흥원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문서는 보안 문서로 일반 직원에게 열람 제한이 있음에도, ♣♣♣에게 보안문서 열람 권한이 부적정하게 부여되어 2018. 7. 5. 19:14경 보안문서 열람이 가능하였음. ♣♣♣에 대한 보안문서 열람 최초 권한 부여자 및 시기는 자체 전산 백업자료로 확인이 불가함.
- 진흥원 「전산정보 업무 관리 규칙」 제17조(사용자 계정 관리)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 계정의 등록·변경·폐기 등을 정보화 책임자의 승인 하에 수행하고 정보화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음.
- 그런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·변경·폐기 업무에 대한 수기 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지 않았으며, 같은 규칙 제1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별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, 권한 없는 직원에게 보안문서 등 전체 문서 열람 권한을 부여한 상태로 운영하는 등 사용자 권한관리를 소홀히 운영하였음.
- ▶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대장(문서) 비치 등 지침 마련 및 시스템 개선하도록 「**개선**」, 정보 보안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(♣♣♣ 등 5명, 실무자)에 대하여 「**훈계**」

## 8

## 외부유출 업무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

- 업무용 개인 컴퓨터를 외부 업체로 반출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계약 업체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하지 않음.
  - 진흥원에서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과거자료 복원을 위해 2018. 7. 26. 컴퓨터를 외부업체로 반출하였음.
  - 진흥원 「전산정보 업무 관리 규칙」 제16조(업무용 컴퓨터 보안관리)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 시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해야 함.
  -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18. 7. 26. 업무용 개인 컴퓨터를 외부 계약업체로 반출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면서 계약업체로부터 비밀유지 계약서(보안각서)를 징구하지 않는 등 업무용 컴퓨터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였음.
- ▶ 진흥원 「전산정보 업무 관리 규칙」에 따라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 
관련자(♣♣♣)에 「훈계」

## 9

## 위임 전결규정 위반

- ♠♠은 2018. 3월경 각 팀별 사업 추진 문서를 본부장 결재를 받도록 구두 지시함.
- 사업 예산 3천 만 원 이상의 계약 2건을 위임 전결 규정에 맞지 않게 원장이 아닌 본부장이 결재함.
- 진흥원 「위임 전결 규정」 별표 1. 공통사항, 원인행위품의 및 예산집행 금액이 3천 만 원 이상인 경우, 원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함.
- ♣♣♣의 2018. 3월경 구두 지시로 모든 사업의 최초 계획서를 제외한 각 팀별 모든 사업 추진 문서를 본부장 결재를 받도록 함.
- ‘2018. ◇◇운영 용역’ 등 2건에 대하여 예산액이 3천 만 원 이상으로

진흥원 「위임 전결 규정」에 따라 원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나 본부장 결재를 받았음.

- ▶ 진흥원 「위임 전결 규정」 제3조(전결권한)를 준수하여 문서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전 직원 교육 실시하도록 「통보」

## 10 지방공무원법(품위유지의무, 성실의 의무) 위반

- 이 건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.